

양주시 공고 제2026 – 1941호

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6. 8. 21.

양 주 시 장

- 1. 목 적 :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- 2. 예고방법 : 양주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angju.go.kr>)게재
- 3. 예고기간 : 2026. 8. 21. ~ 2026. 9. 9. (20일간)
- 4. 관련근거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- 5. 보호구역 지정 및 위치(붙임참조)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사 유	비 고
신규지정	새봄초등학교	회천중앙로	개교	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.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-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(0505-041-2140)
- 다. 제출장소 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 도로관리과(2층)
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양주시청 도로관리과(☎031-8082-7323)
- 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【 붙임 1 】

■ 시설명 : 새봄초등학교(양주시 회정동 850)

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		
의견제출서		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	
	당사자	성명(명칭)
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
년 월 일		
의견제출인		(서명 또는 인)
	귀하	
유의사항		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210mm×297mm[백상지(80g/m2) 또는 중질지(80g/m2)]		